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407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진○○
피 고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24,920,350원, 지방교육세 271,420원, 농어촌특별세 10,82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13. 5. 31. 설립된 회사로서 ◯◯ ◯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3.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수선공사계약, 증축공사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뒤 이에 따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8. 6. 22.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같은 해 11. 27. 증축공사에 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대수선공사계약	증축공사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
착공일	2017. 11. 25.	2017. 11. 25.	2017. 11. 25.
준공예정일	2018. 5. 31.	2018. 5. 31.	2018. 5. 31.
계약금액	1,595,000,000원	705,100,000원	4,573,800,000원

다. 원고는 2018. 6. 19. ◯◯광역시장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284,800원(이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6. ~ 8.경 D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난간대, B2휀스, 안전바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뒤 이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였다.

	난간대 공사계약	B2휀스 공사계약	안전바 공사계약
착공일	2018. 8. 1.	-	2018. 6. 28.
준공기한	2018. 8. 25.	-	2018. 7.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계약금액	25,300,000원	1,200,000원	9,900,000원

마. 원고는 2019. 1. 25. 이 사건 공사 중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이하 각 '이 사건 대수선공사' 및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세목	분류	대수선공사(원)	증축공사(원)
취득세	본세	34,596,120	21,411,420
	가산세	7,121,600	-
지방교육세	본세	-	1,223,500
	가산세	-	-
농어촌특별세	본세	3,459,610	1,529,380
	가산세	162,940	-
합계		**45,340,270**	**24,164,300**

바. 피고는 2022. 12. 23.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23. 2. 8. 이 사건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부분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 중 증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내역 중에는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및 위 라.항 기재 난간대, B2휀스, 안전바 공사 부분이 각 포함되어 있다.

세목	분류	대수선공사(원)	증축공사(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취득세	본세	74,553,080	3,491,930
	가산세	45,267,870	1,607,470
지방교육세	본세	-	199,530
	가산세	-	71,890
농어촌특별세	본세	7,455,300	249,420
	가산세	3,026,320	89,200
합계		**130,302,570**	**5,709,440**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5.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 내지 8, 10, 13,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한다) 및 난간대, B2휀스, 안전바 공사에 따라 시공된 부분(이하 '이 사건 시공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따라 시공된 부분 중 '건축물의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특정 없이 그 시공부분 전체에 대해 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11. 23. E(원고의 대표자인 F의 남편이자 'G요양병원'의 병원장)과 이 사건 건물 전체(지하 3층 ~ 지상 9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억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8. 5. 23. ~ 2023. 5. 22.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를 진행하되, 임차인의 정상영업일까지 대수선공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력하여 공사하기로 한다.
2. 임대인은 대수선공사 및 내부시설 공사기간으로 2018년 5월 22일까지 준공허가(병원 개설허가조건)를 득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2018년 5월 23일부터 월차임을 일금 일억일천만원정(₩110,000,000)을 지불한다. 단 임대인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병원 영업개시 지연 시에는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지체일수에 따라 하루(1일) 기준 500만 원의 위약금을 산정하여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며, 임차인은 최종 준공허가 날짜로부터 2주 이내 입주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영업업종은 병원이다.
(이하 생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나) 이 사건 대수선공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견적서에는 공사범위로 가설공사, 인테리어공사(수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장비설치공사, 위생기구설치공사, 소화배관공사, EHP설치공사[1], 환기덕트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고, 표지의 "비고/REMARK"란에는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안공사', '블라인드', '통신공사(인터넷 및 전화설치)', '사무가구', '의료가스설비, 주방설비공사', '주방 내부 가구 및 기구류', '제작가구, 이동가구', '사인공사', '자동제어, 제연설비', '정화조설비', 'AV공사', '가전제품'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중 설비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핸드드라이기'는 아래와 같이 벽에 부착된 상태로 설치되었다.

마) 이 사건 시공부분 중 난간대, B2휀스, 안전바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내·외벽이나 난간에 부착된 상태로 설치되었다.

1) 피고는 설비공사 중 'EHP설치공사' 부분 377,118,500원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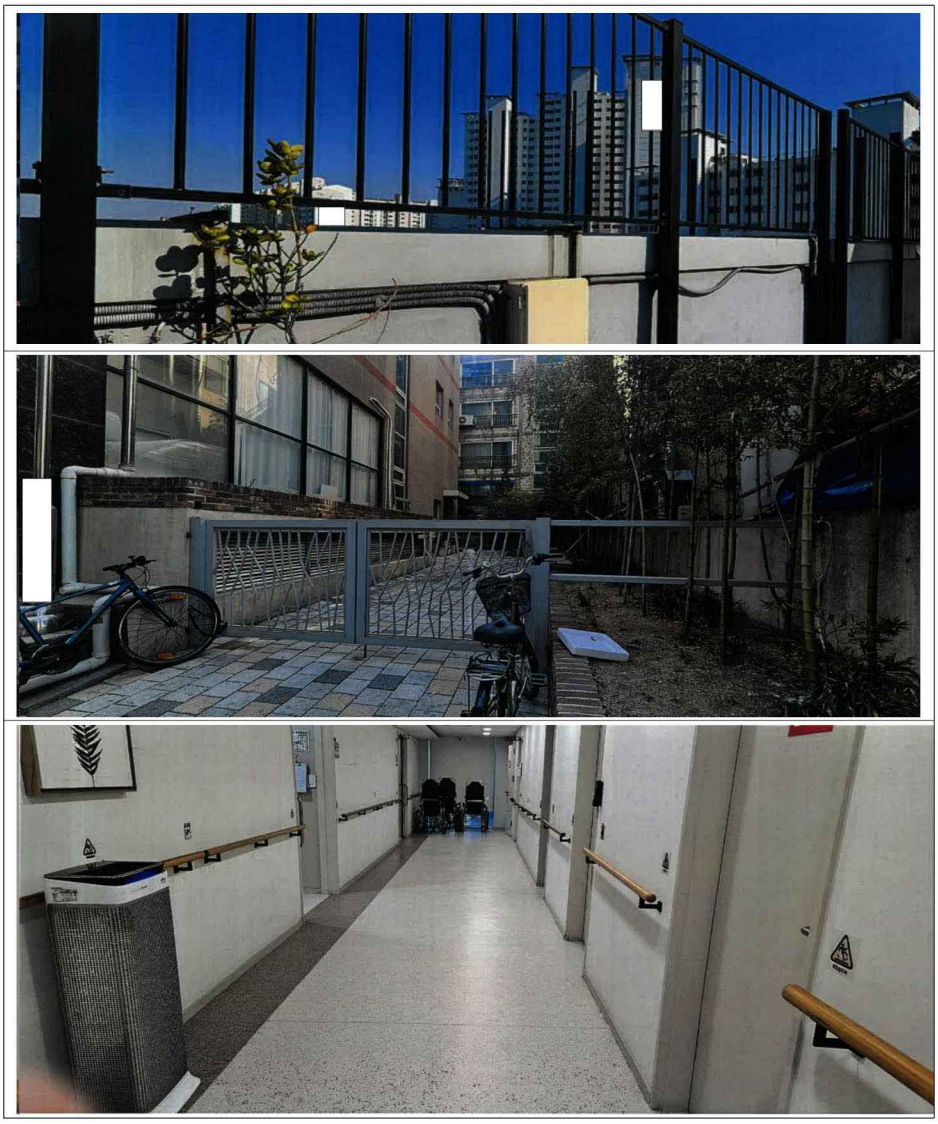

바) G요양병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 이후인 2018. 8.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사) 원고와 E은 2023. 6.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임대차 기간을 2023. 7. 1. ~ 2028. 6. 30.로 정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111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충당이자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의 취득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시공부분 관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공부분은 그 전체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의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병원 개설허가조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공사 및 내부시설 공사를 마친 뒤 2018. 5. 22.까지 준공허가를 얻어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위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병원의 영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내부시설 공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대수선공사계약, 증축공사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은 계약금액 및 선급금의 비율을 제외한 모든 계약조건이 동일한 점, ③ 원고는 2018. 1. ~ 11.에 총 13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대수선공사계약, 증축공사계약, 인테리어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초부터 이 사건 건물에 병원(G요양병원)을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주체구조부를 병원 용도에 맞게 변경하는 이 사건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병원 영업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는 '병원 개설'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시공부분은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설령 앞서 본 난간대, B2휀스, 안전바 등 일부 시설이 이 사건 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해당 시설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시공부분은 그 전체가 '요양병원의 영업을 위한 내부시설'로서 하나의 효용을 이루고 있어 나머지 시설과 분리하면 그 부분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고 요양병원으로서의 효용가치도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으면서 그 자체로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는 EHP설치공사 시공부분(냉난방기, 실외기 등) 및 블라인드, 인터넷 및 전화설비, 사무가구, 주방 내부 가구 및 기구류, 제작가구, 이동가구, 가전제품 등은 애초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 내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 등의 증축, 대수선 등의 허가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증축, 대수선 등에 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해당 건축물이 소방시설법이 규정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다만 「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으로써 위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즉 소방시설공사는 대수선공사 또는 증축공사에 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요건으로서 대수선공사 또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함께 실시되어야 하므로, 소방시설은 대수선공사 또는 증축공사로 시공된 부분과 일체로서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방시설공사는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포함되어 있고, ○○남부소방서장은 2018. 6.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 동의용)를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 관련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3호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예시로 봄이 타당하다.

(2) 「하수도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7조 제1항 제6호 가목, 나목은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부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의 원인이 된 건축의 준공예정일 또는 행정행위일의 1개월 전에 부과하며, 준공 허가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을 제7호증의 1[2],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건 대수선공사 및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부과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대수선공사에 대한 사용승인 3일 전인 2018. 6. 19.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시공부분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으로서 이 사건 시공부분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이 사건 시공부분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및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이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협의사항'에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이 기재되어 있다(9쪽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판사 신○○

판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9

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끝.